

의안번호	2220096
의 퇴 인	박수영 의원
회 답 일	2026. 7. 28.
추계번호	26F36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차세대원자력 추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제1항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차세대원자력 추가 - (현행) 8개 분야 → (개정안) 9개 분야 - 적용기한: 2029.12.31.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제1항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으로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원자력을 포함하는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어 법인세수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10조제1항)

- 국가전략기술*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 및 통합 투자세액공제에서 일반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
- ※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의미

[표 1]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 공제율 비교

(단위: %)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외	반도체
R&D 세액공제	중소기업	25	30	40	40
	중견기업 ²⁾	8~20	20~25	30~35	30~35
	대기업	최대 2	20	30	30
통합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10	12	25	30
	중견기업 ²⁾	5~7.5	6~9	15~20	20~25
	대기업	1	3	15	20

주: 1) 중견기업의 공제율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전환된 이후 일정 기간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을 포함

1. 표의 공제율은 당기 R&D 비용 또는 당기 투자분 기준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를 현행 8개 분야에서 차세대원자력을 포함한 9개 분야로 확대

-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2025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및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되어 8개 분야가 되었음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 (개정안) 상기 분야에 차세대원자력 분야 추가

- 분야 내 구체적인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규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되는 차세대원자력 기술의 범위와 해당 분야의 R&D 및 투자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투자 규모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차세대원자력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대상 기술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

- 동법 시행령의 [별표 7]에서는 원자력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의 에너지·환경 분야(세부분야: 원자력)에 포함하여 구체적인 기술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구체적인 기술범위는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표 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신성장·원천기술의 원자력 관련 기술범위

기술분야	
에너지·환경 (원자력)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 설계 기술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신형원전(Advanced Power Reactor) 표준설계 기술
	가압경수형원전(Pressurized Water Reactor)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친환경·저탄소 후행 핵주기 기술
	가동원전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SMR(Small Modular Reactor) 설계 및 검증 기술
	SMR(Small Modular Reactor) 제조 기술
	대형 원자력발전소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원전 분야 적용 기술

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기준

- 참고로, 미국의 경우 차세대원자로(Advanced Nuclear Reactor)를 기존 상용 원자로 대비 성능과 안전성 등이 현저히 개선된 핵분열 원자로 또는 핵융합 원자로로 정의하며, SMR뿐 아니라 다양한 냉각재·감속재·연료를 사용하는 혁신형 원자로를 포괄함¹⁾

1) Energy Act of 2020, Pub. L. No. 116-260, Division Z, §2001.

※ SMR은 모듈당 발전용량이 300MWe 이하인 차세대 원자로로 정의됨²⁾

- 또한, 차세대원자력 기술에 대한 기업규모별 R&D 지출액, 사업화시설 투자액 및 세액공제 규모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R&D 지출액, 사업화시설 투자액 및 세액공제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 국세청에 따르면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 범주까지는 구분이 가능하나, 개별 기술분야별 공제실적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음

※ 참고로, 2024년 법인세 신고기준 기술구분별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3] 기술별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 2024년 법인세 신고기준
(단위: 억원)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19,713	6,164	2,682
통합투자세액공제	14,699	223	599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

2) IAEA (2023), Terms for Describing Advanced Nuclear Power Plants, NR-T-1.19.